고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고교·대학간 연계활동 규정

제 정 2014.0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에서 고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고교·대학간 연계활동을 통해 입시관련 제반 활동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건의하여 고교교육정상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고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고교·대학간 연계활동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②위원회는 입학취업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 또한 위원회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.

③위원회 위원은 우리대학 교원 및 고교 교장·교사 중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협의하여 수행한다.

- 1.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독자적 노력
- ①대학의 비전과 추진 계획
- ②대입전형 간소화 노력
- ③대입전형에서 학생부담 완화 노력
- ④학교교육 중심의 전형 운용
- ⑤입시정보 제공 확대
- ⑥고교-대학 연계 활성화 노력과 계획
- ⑦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과 계획
- ⑧추수지도 내실화를 위한 노력과 계획
- ⑨대입전형 개선 노력
- 2.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학의 독자적 노력
- ①학생부 전형의 공정성 확보 노력
- ②특별전형의 공정성 확보 노력-외국인 및 재외국민 전형
- ③입학사정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온라인교육 시행 계획
- ④기타 위와 관련된 입학사정관제도 운영계획 전반 사항에 관한 사항

제4조(임기)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)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제6조(회의결과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하여 다음 학년도 전형운 용에 반영토록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기타) 이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